

10. 土地去來契約許可區域指定(2)

建設交通部 公告 第1997-37號 1997. 2. 18

1.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중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

시·도	대 상 지 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기 허가구역 제외)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포이동, 수서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기 허가구역 제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잠실동, 신천동 (기 허가구역 제외)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서봉동, 박호동, 신촌동, 도호동, 월곡동, 산정동, 비아동, 도천동, 수완동, 월계동, 쌍암동, 산월동, 신창동, 신가동, 운남동, 하남동, 진곡동, 오선동, 장덕동, 흑석동, 안청동, 장수동, 임곡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기 허가구역 제외)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신안동, 소재동,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 홍도동, 삼성동, 정동, 중동 (기 허가구역 제외)

시·도	대 상 지 역
대전광역시	<p>중구 은행동, 선화동, 목동, 증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옥계동, 호동, 대사동, 부사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기 허가구역 제외)</p> <p>서구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동 (기 허가구역 제외)</p> <p>유성구 반석동, 수남동, 안산동, 외삼동, 장대동, 갑동, 노은동, 지족동, 죽동, 궁동, 어은동, 구성동, 하기동 (기 허가구역 제외)</p> <p>대덕구 대화동, 오정동, 송촌동, 비래동 (기 허가구역 제외)</p>
강 원 도	<p>춘천시 동지역 전역 (기 허가구역 제외)</p> <p>강릉시 동지역 전역 (기 허가구역 제외)</p>
충 청 남 도	<p>천안시 동지역 전역 (기 허가구역 제외)</p> <p>목천면 (기 허가구역 제외)</p> <p>공주시 중학동, 중동, 반죽동, 봉황동, 산성동, 금성동, 태봉동, 옥룡동, 신기동, 소학동, 상황동, 신궁동, 쌍신동, 월미동, 무릉동, 월송동 (기 허가구역 제외)</p> <p>반포면 (기 허가구역 제외)</p> <p>장기면 (기 허가구역 제외)</p> <p>의당면 (기 허가구역 제외)</p> <p>우성면</p> <p>아산시 배방면 (기 허가구역 제외)</p> <p>음봉면 (기 허가구역 제외)</p> <p>논산시 성동면, 광석면, 부적면, 은진면, 채운면</p>
전 라 북 도	<p>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경원동, 풍납동, 고사동, 태평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기 허가구역 제외)</p> <p>덕진구 서노송동, 진북동, 인후동, 덕진동, 금암동, 팔복동, 우아동, 산정동, 금상동, 호성동, 송천동 (기 허가구역 제외)</p>

시·도	대 상 지 역
전라북도	<p>익산시 창인동, 중앙동, 평화동, 갈산동, 주현동, 인화동, 동산동, 석탄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목천동, 만석동, 현영동, 신통동, 신동, 영등동, 어양동, 신흥동, 금강동 (기 허가구역 제외)</p> <p>오산면</p> <p>황등면 울촌리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하 “준농림지”라 한다)</p> <p>왕궁면 홍암리·광암리·발산리·평장리·왕궁리·동촌리·도순리·동용리의 준농림지</p> <p>삼기면 간촌리·서두리·오룡리의 준농림지</p> <p>정읍시 수성동, 하북동, 장명동, 구룡동, 상동, 시기동, 연지동, 농소동, 영과동, 망제동, 흑암동, 용계동, 공평동</p> <p>용산동·신정동의 준농림지</p> <p>입암면, 소성면</p> <p>김제시 백구면</p> <p>완주군 용진면, 소양면</p>
전라남도	<p>목포시 전역(기 허가구역과 서산동, 금화동, 온금동 제외)</p> <p>무안군 일노읍 (기 허가구역 제외)</p> <p>삼향면 (기 허가구역 제외)</p>
경상남도	<p>하동군 청암면 목계리</p> <p>합천군 마천면, 휴천면</p>

2. 지정기간 : 1997년 2월 19일 ~ 2000년 2월 18일

3.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계획구역 안	주거지역	270㎡ 초과
	상업지역	330㎡ 초과
	공업지역	990㎡ 초과
	녹지지역	330㎡ 초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270㎡ 초과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	1,000㎡ 초과
	임야	2,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 초과

※ 위면적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회보